

##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12월 6일 목포시장
- 나. 회부일자 : 1998년 1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1998년 1월 16일

### 2. 제안설명요지

#### 가. 제안설명

- 본회의(제1차) : 총무국장 민 병 갑
- 총무 위원회 : 세정과장 주 북 춘

#### 나. 제안이유

-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신설로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조문 신설

#### 다. 주요골자

-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조문 신설(안 제16조의 2)
  -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
  -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  
(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인 경우 잔임기간, 당연직 위원은 제외)
  -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지급
  -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### 4. 위원회 활동

- 제91차 총무위원회 회의('98. 1. 17)
  -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응답
- 제92차 총무위원회 회의('98. 1. 19)
  - 안건검토 및 심사의결

## 5. 토론요지

-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신설로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코자 하는 안으로
-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사전에 구해주는 절차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 함으로써
- 세금의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함.

## 6. 심사의결

【원안가결】